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2022. 9. 28.(수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호경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9월 19일

-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호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계 법규 등을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관계 법규 변경(안 제4조 및 제16조)
 - 「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 - 「소방장비관리규칙」 →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
-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 신설(안 제4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2조 및 제1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인 「소방관리장비법 시행규칙」 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가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관리에 관한 소방서장의 지도·감독 실시 의무에 관한 변경된 근거 규정반영 및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 준용되는 근거 규칙을 명확히 하고,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반장·부장을 임명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자치법규 명칭 변경 및 의용소방대 반장과

부장의 자격 기준 신설에 대한 사항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제2조제2항 본문 중 “법”을 “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개정함
- 제2조제3항 본문 중 “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”을 “규칙 제2조제 2항”으로 개정함.
- 제2조제4항 중 “규칙 제2조2항”을 “규칙 제2조제2항”으로 개정함.
- 제4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”을 “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개정함.
-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.
제4조의2(반장·부장의 자격 기준) 대원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,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,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2조제3항 본문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개정함.
- 제16조제2항 중 “「소방장비관리규칙」”을 “「소방장비관리법시행규칙」”으로 개정함.
- 제18조제6항 중 “한국소방안전협회”를 “한국소방안전원”으로 개정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22. 9. 2.~'22. 9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관련 자치법규 명칭 변경사항 반영 및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,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호경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8월 30일
발 의 자 : 김호경, 이동우, 김종필,
박지현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계 법규 등을 변경하고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관계 법규 변경(안 제4조 및 제16조)
 - 「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」 → 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
 - 「소방장비관리규칙」 →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
- 의용소방대 반장과 부장의 자격 기준 신설(안 제4조의2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(안 제2조 및 제1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
- 조례안 예고 : 2022. 9. 2. ~ 2022. 9. 8.(의회 홈페이지)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”을 “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”을 “규칙 제2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규칙 제2조2항”을 “규칙 제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충청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”을 “「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반장·부장의 자격 기준) 대원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 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명하되, 법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,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을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「소방장비관리규칙」”을 “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6항 중 “한국소방안전협회” 를 “한국소방안전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려면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③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문소방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④ <u>규칙 제2조제2항</u>에 따라 대학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전문의용소방대를 의용소방대 하부조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의용소방대원의 임명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회계 및 물품출납 담당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<u>충청</u></p>	<p>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규칙 제2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규칙 제2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의용소방대원의 임명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「충청</p>

북도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을
준용한다.

<신 설>

제12조(구성) ①·② (생략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
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
거나 위촉하고, 공무원인 위원은
전체위원 수의 1/2을 초과할
수 없다.

1. ~ 3. (생략)

④ ~ ⑥ (생략)

제16조(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
관리) ① (생략)
②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가 법
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
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
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

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
에 관한 규칙」-----.

제4조의2(반장·부장의 자격 기
준) 대원에서 반장, 반장에서 부
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각각 3년
이상 근무한 대원을 최우선 임
명하되, 법 제7조 및 제13조의
활동 사항을 고려하여 임명하여
야 한다. 다만 임명 기준에 적합
한 대원이 없거나, 신규로 의용
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한다.

제12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 사람 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·
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「소방장비관리규칙」에 따라
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·
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(교육 및 훈련) ① ~ ⑤
(생략)

⑥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,
소방학교, 한국소방안전협회 등
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에는
해당 월중 교육을 이수한 것으
로 본다.

⑦ (생략)

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」-

-----.

제18조(교육 및 훈련) ① ~ ⑤
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한국소방안전원 -----
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2조(의용소방대의 설치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소방서장은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,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·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문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(이하 “전담의용소방대”라 한다)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7. 8. 29.>